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5. 8 선고 2019가합594253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한국무역보험공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, 손성락

피 고 1. A

2.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0. 5. 8.

주 문

1. 피고 A은 원고에게 4,236,738,560원 및 그 중 4,236,477,060원에 대하여 2019. 11. 28.부터 2020. 1. 14.까지는 연 10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

2. 가. 피고들 사이에 2019. 4. 19. 체결된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관한 피고 A의 E 주식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00,000,000원을 증여한 계약을 취소한다.

나. 피고 B는 피고 A에게 위 가.항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, E 주식회사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피고 A에게 양도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4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, 제208조 제3항 제1호(무변론 판결)

재판장 판사 홍기찬, 판사 권혁준, 판사 김창용

별지